

인천지방법원 2018. 5. 16 선고 2018가단333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이행등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5. 16.

## 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/7 지분, 피고 C, D은 각 2/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0. 1. 5. 접수 제6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,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## 2. 각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장민석

별지